

##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5. 19.(수) 14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  
김재홍 부위원장  
이기주 상임위원  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석진 상임위원

### 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17차,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 확인

- 제25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1건,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·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## ㉞ 의결사항

### 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27-096)

- 방송법 개정('15.12.22)에 따라 재산상환 제출 면제 사업자의 기준,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 원안대로 의결함

### 나.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27-97~100)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제1항 및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제1항을 위반한 통신사 영업점(4개)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(과태료)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디엠비(DMB) 삼천점 등 4개 영업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(자료제출 등)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,
- 같은 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제1항을 위반한 디엠비(DMB) 삼천점, 모바일택토리에 대해 제76조(과태료)제1항에 따라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### 다.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27-101~113)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제1항,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를 위반한 13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(과태료)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(주)우리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(자료제출 등)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,
- 같은 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 및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제1항을 위반한 (주)우리정보통신, 대신네트웍스(주)에 대해 각 2,000만원, (주)픽스에 대해 1,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- 같은 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을 위반한 (주)기프트엠, (주)이앤비미디어

어에 각 1,000만원, (주)오키컨세션에 700만원, 같은 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제1항을 위반한 (주)윤넷, BM 커뮤니케이션즈, (주)새누리, 대경모바일, (주)BH컴즈 등 5개 사업자에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## 6. 폐 회 (14:24)